

### 3.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전용 보고

추진배경

-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마련 필요

사업개요

- 사업근거 : 노인복지법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(보건복지부)
- 사업명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
- 지원대상 :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※ 유사사업 중복이용자 제외
- 사업내용 :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
- 사업예산 : 42,288,639천원(국비 28,167,697 / 시비 14,120,942, 구비별도)  
- 분담비율 : 국비 50% 시비 25%(구비 25% 별도)

전용사유 및 대책

- 전용사유 : 종사자 추가채용 및 시간외수당, 연차휴가보상, 복리후생수당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필요
- 전용금액 : 185,540천원 ※ 국비 증액 366,995천원 간주처리 완료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예산액	변경요구액		변경후 예산현액	전용승인 날짜
정책	단위	세부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	
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시설운영내실화	독거자가 어르신 중점대상	노인맞춤돌봄서비스	민간	사회복지사업보조(307-11)	(x78,272) 152,459	4,085	-	(x78,272) 156,544	'21.9.29.
			자치단체	자치단체경상보조금(308-01)	(x28,456,420) 42,503,175	181,455	-	(x28,456,420) 42,684,630	
	어르신영양관리	노인장기요양시설	일부전	사회보장적수혜금(301-01)	201,497,731	-	185,540	201,312,191	

추진결과

- 보조금 교부(市→자치구) 완료 : '21. 10. 7.

작성 자 | 어르신복지과장: 김연주 ☎2133-7400 어르신돌봄팀장: 고정숙 ☎7412 담당: 이성주 ☎7417